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03 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정청래·박영순·윤미향

오영환 · 남인순 · 이수진

임오경 · 김경만 · 김남국

이상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개·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동물이 숨지 는 사건들이 전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.

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동물이 방치될 경우 일사병·질식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, 이에 대한 벌칙 조 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제3호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#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떠나는 경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차량 안에 남겨두는 행위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	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	②
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	
는 아니 된다.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의3.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
	차량을 떠나는 경우 반려 목
	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
	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</u>
	<u>동물을 차량 안에 남겨두는</u>
	<u>행위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